

<h1 style="margin: 0;">건설기계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검사증</h1>				
발급번호 : 4205-20210107-000042		최초등록일 : 2003-05-07		
등록사항	건설기계의 표시			구 등록번호 : 서울07가6524
	등록기계명	기중기	등록번호	강원07고5628
	형식	RK250-II	규격	25톤
	원동기 및 형식	6D16-T	차대일련번호	R252-3676
	사용본거지(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)	조동중기(주) 강원도 동해시 감추5길 36(천곡동)		
	소유자의 표시			
성명	서미숙	주민(사업자, 외국인)등록번호	740403-2348022	
주소	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30, 103동 1606호(쇄운동, 부영아파트)			
사유 : 변경 「건설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정기검사 임을 증명합니다. 동 해 시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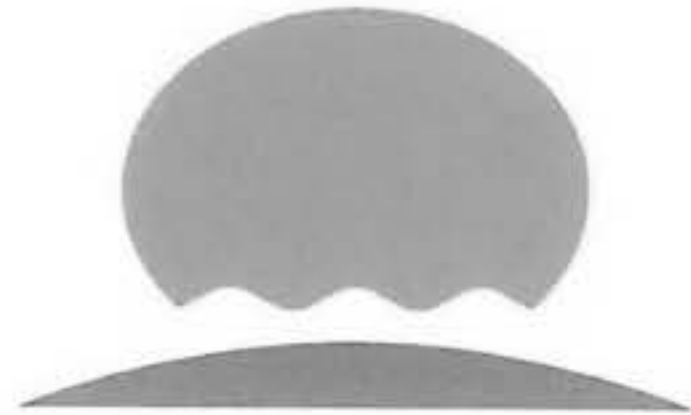
1. 주요 제원			
형식승인번호 : 2-07-0215-00-03			
길이	11135 mm	너비	2620 mm
높이	3540 mm	총중량	26400 kg
주행방식	자주식 (타이어식)	정격출력	215/2800S/RPM
기통수	6 기통	연료종류	경유
2. 저당권등록사실			
구분(설정 또는 말소)	일자		
설정	2016-12-23		
* 그 밖의 (을)를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
3. 작업장치	
*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	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	설치()
대형건설기계 표시	설치()
*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하여야 합니다.	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동 해 시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강원07고5628 5. 등록사항변경란			
구 분	검 사 일	유효기간 (까 지)	검사기관	담 당 자 명	연 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 인
신규등록일 : 2003-05-07								
정기검사	2017-05-17	2018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정기검사	2018-05-25	2019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정기검사	2019-05-16	2020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정기검사	2020-05-07	2021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삼진				
정기검사	2021-04-28	2022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김광남				
정기검사	2022-04-20	2023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박석민				
※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 등록일을 적습니다. ※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